

論 文

## 발굴된 보물선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제에 관한 연구

이창우\* · 강신영\*\* · 이상집\*\* · 김영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안전교육팀 교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A study on legal regime relating to ownership of excavated treasure ship

Chang-Woo Lee\* · Sin- Young Kang\*\* · Sang-Jip Lee\*\* · Young-Gu Kim\*\*

\*Instructor,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Busan, Korea

\*\*Professor,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Korea

**요약 :** 여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의 보물선이 침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영해에서 보물선 탐사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몇 건의 문화재 관련 발굴 사례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보물선 발굴 사례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만약 침몰선을 인양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들과 그 절차들, 그리고 침몰선의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과 국제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존재하는 법시스템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보물선, 발굴, 수색과 구조, 국제협약, 해양법

**Abstract :**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of Korea excavated the massive shipwreck and her cargo from 1976 to 1984 sunken under Jeungdo Island, Sinan County located in the southwe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the first systematic underwater excavation in Korea, and one of the richest underwater discovery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reference materials, more treasure shipwrecks are assumed to be sunk under seasides of Korean peninsula. Such as, Donskoy near Ulleung Island, Kow Shing near Ul Island, and Yamashita treasure ship off Korean peninsula, etc. The excavations of these treasure ship are likely to raise ownership dispute between private finders and government authority, and between ship owner and excavator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awarenes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isting legal regimes related to the excavated treasureship. And also it tries to suggest a new proactive measure to prevent the most likely ownership disputes between interested parties.

**Key Words :** Treasure ship, Excavation, Search and Rescue, International Convention, Law of the Sea

### 1. 서 론

여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의 보물선이 침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영해에서 보물선 탐사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몇 건의 문화재 관련 발굴 사례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보물선 발굴 사례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선진 해양국가와 마찬가지로 만약, 보물선을 인양하였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다. 보물선 인양 작업은 단순히 금은 보화를 획득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물을 인양하였을 경우의 국가재

\*정희원, janlce27@inet.seaman.or.kr, 051)620-5813

\*\*정희원, sykang@kmaritime.ac.kr, 051)410-4323

lsj@kmaritime.ac.kr, 051)410-4234

kimrokn@kmaritime.ac.kr, 051)410-4395

정의 이득도 있겠지만 이와 부가해서 침몰선 인양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도전 정신의 고취, 새로운 각도로서의 바다의 조명 등 부가적인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또한 수중고고학의 발전 및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많은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물선 인양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물선 인양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와 소유권이 언급된 우리나라의 관련법을 소개하고 타국의 자국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한 국제법과 분쟁의 해결방법들 및 그 절차를 소개하였다.

**Table 1** The status of approved an excavation work by MOMAF

승인기관	발굴신청자	발굴해역	발굴기간	발굴물건 및 추정량(추정가액)	비고
인천 해수청	골드쉽(주)	옹진군 덕적면 울도 주변해역	'01. 2. 1 ~ '03. 1.31	선박(고승호) 및 은 375kg (0.9억 원)	진행 중
포항 해수청	동아건설(주)	울릉군 저동 주변해역	'99.10. 5 ~ '04.12.31	선박(돈스코이호) 및 금괴류 500kg (50억 원)	"
군산 해수청	신동식(개인)	군산시 옥도면 맘도 주변해역 (2개 구역)	'99. 9.15 ~ '02. 8.27	금 10kg (1억 원)	완료 (발굴실적 없음)
"	채상훈(개인)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주변해역	'99. 9.15 ~ '02. 9.14	금 5kg 은 15kg (0.695억 원)	"
"	조수찬(개인)	군산시 옥도면 맘도 주변해역 (3개 구역)	'99. 9.15 ~ '02. 9.14	금 6kg 은 28kg (1억 원)	"
"	신동식(개인)	군산시 옥도면 맘도 주변해역	'01. 9. 7 ~ '02. 9. 1	금 10kg (1억 원)	"
여수 해수청	신동식(개인) 및 삼애인더스(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주변해역	'01. 6.13 ~ '02. 6.12	금괴 30kg (3억 원)	"
목포 해수청	삼애인더스(주)	진도군 임회면 굽포리 대섬 주변해역	'01. 5. 1 ~ '01. 12.30	금괴등 보석류 71kg (7.56억 원)	"
여수 해수청	신동식(개인)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주변해역	'00. 7.11 ~ '01. 5.16	금괴 10kg (2억 원)	"
대산 해수청	신동식(개인)	태안군 균홍면 마도 주변해역 / 서천군 마량리 주변해역	'99.12.29 ~ '00.12.28	금괴 10kg (1억 원)	완료 (발굴실적 없음)
목포 해수청	소운하(개인)	진도군 임회면 굽포리 대섬 주변해역	'98. 9.14 ~ '98.12.31 ('00. 5.1 ~ '00.10.30)	금괴등 보석류 15kg (2억 원)	"
해군	신동식(개인)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대개 큰동섬주변해역	'99. 5.10 ~ '99.12.15	금괴 10kg (1억 원)	"

(2002. 9월 현재 : 진행 중 2건, 완료 10건)<sup>1)</sup>



**Fig. 1** The status of approved an excavation work by MOMAF

**Table 2** The cases of excavated treasure ship

침몰선박	발굴 보물 및 추정량	
스페인의 보물선단	플로리다 해역에 침몰한 11척의 스페인선박들. 1993년 200만 달러 상당의 보물을 발견함.	
Nuestra Senora de la Atocha	1622년에 침몰한 스페인 선박. 1985년 위치 확인. 3억 달러의 가치 추정	
베라크루즈 선박이	텍사스 파이레이 섬 근처에서 침몰한 16척의 선박. 이 중 2척만 발견. 18억 달러의 가치 추정	
노스트라 세풀라	1656년 침몰한 스페인 선박. 10억 달러의 가치 추정	
라스마라 빌라스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1711년 침몰. 위치 미확인. 4억 달러의 가치 추정
멘도자 선단	1614년 침몰한 스페인의 범선단. 9억 달러의 가치 추정	
스페나시 아르마다 선단	1588년 침몰한 스페인의 전함. 가치 산정 불가능	
산타크루즈호	679년 웨일즈 해안에서 침몰한 스페인의 범선. 6,000만 달러의 가치 추정	
노스트라 세풀라	1804년 침몰한 스페인의 폐속 범선. 2억 달러의 가치 추정	
라스 메르세데스호	1752년 침몰한 네덜란드 상선. 1985년 발견되어 1500만 달러 상당의 보물이 경매됨	
캔더말센호	샌디에고호	1600년 침몰한 스페인 범선. 1991년에 발견됨
플로라 마르호	1512년 침몰한 포르투칼의 무장상선. 10억~90억 달러 가치 추정	
센트럴 아메리카호	1857년 침몰한 미국의 중기선. 1988년 10억 달러의 보물 회수	
루틴호	1799년 침몰한 영국의 전투용 폐속 범선. 강한 조류로 접근 불가능. 1억 9,500만 달러의 가치 추정	
존 베리호	1944년 침몰한 미국의 화물선. 2억 달러의 가치 추정	
Titanic	1985년 9월 1일 수심 3,900m에서 74년 만에 타이타닉을 발견	
기타	- 일본, 호주, 중국 해역 등지에서 금괴 발견 - 플로리다 앞바다(1980년) 스페인 선적의 마루가리타호에서 126억 원 상당의 금은 발굴 - 터키 보드룸 항 앞바다의 유물발굴, Vasa호, Monitor호, Mary Rose호 등	

1)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http://www.momaf.go.kr)), 2002년 9월

## 2. 관련 국내법

### 2.1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우리 나라 영해에 침몰해 있는 보물선 인양 작업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1978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9247호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인양물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 그 처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물선의 원소유자가 없을 경우 인양자가 80%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즉, 인양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금은 보화 및 기타 가치있는 물건인 경우 원소유자가 없다면 소유권의 80%는 발굴자에게 20%는 국가에게 귀속된다(제16조 국유매장물의 보상등).

#### 1) 관련조항

- ① 제16조 (국유매장물의 보상등)
- ② 제17조 (사유매장물의 반환)
- ③ 제18조 (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Table 3** The approval procedure of excavation works

매장물추정가액의 10%상당의 발굴보증금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 점용허가 ⇒ 남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신청	(금액 또는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남부 가능)
신청서작성(매장물의 표시, 추정량, 추정가액, 발굴경위 포함)		
첨부서류: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작업계획서, 사업자금 조달계획서, 소요경비명세서,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 보증서 또는 소용경비액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일 경우 소요경비의 50%에 상당한 재산권자이어야 함)		

**Table 4** The report items during excavation work

작업시행	⇒	작업진도보고	⇒	이종물건의 신고
· 승인 후 30일이 내 작업개시	· 매월 15일과 말 일에 보고(10일 이내)	· 10일이내 보고할 것		
· 작업개시 10일 전 에 보고	· 발굴물건의 품명, 수량, 중량 보고	· 품명, 매장추 정량, 발견연 월일 등 포함		
· 작업연기승인:작 업개시일 이후 10 일 이내 보고 신 청	· 작업완료 및 중 도시 10일 이내 보고			

### 2.2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수중문화재도 포함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수중문화재에 대해 수중문화재 특별법(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영국 등 몇몇 나라는 해저 발견물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재보호법에서 통합적으로 수중문화재를 적용하고 있다. 그 중 보물선(수중문화재와 관련한 매장물 등) 인양과 관련한 규정들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장 제43조 (발견신고)”, “제3장 제48조 (국가귀속과 보상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3조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들이 있고 또한 유실물법 “제13조 (매장물)”, 민법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와 연계시켜 인양한 매장물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 그 모든 매장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

## 3. 주요국의 국내법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주로 인양물이 문화유산인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관련법을 가지고 있고 그 형태들도 다양하다. 어떤 나라는 해저 유적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나라가 있고 일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해저 유적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으며 그 외 별도의 법을 제정해 놓은 나라들, 그리고 해저 유적의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관련법 등과 같이 다른 법들과 연계시켜 놓는 나라도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연방국가의 법과 연방구성국가의 법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수중문화유산에 대해서 법이 포함하는 영역은 대부분 전 영토와 영해에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수중문화유산의 범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덴마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주변국들은 150년 이상 해저에 분실되었다가 발견된 대상에 대해서 법을 적용시킨다거나 스웨덴은 100년 전에 분실되었던 것을 적용시키고 있고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100년 정도된 물건에 법을 적용시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각 국의 수중문화유산과 관련된 법은 보호조치의 성격, 보호의 범위, 관련 특별 원칙의 여부, 발견자에 대한 특별 보상 조항이나 위반자에 대한 벌칙금의 조항들이 서로 다르게 다양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느 범위 정도를 수중문화유산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하겠지만 그 외 인양물이 문화유산이 아닌 금은 보화나 기타 가치있는 물건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비슷하게 원소유자가 없을 경우 발굴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형식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난파선과 해난 구조법”, “귀중한 발견물 법” 그리고 도굴을 규제하기 위한 국립공원 관련법, 세관 및 유사 규제법 등과 같이 관련법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법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Table 5 A various relevant law of each countries**

법의 유형	내 용
해저유적 특별법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포르투칼, 영국 등
일반 문화재 보호법	-고대유물법령: 이스라엘, 페키스탄, 수단 -문화재언급: 필리핀 -기념물언급: 말라위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지역 언급: 카메룬 -기념물과 고고학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언급: 멕시코 -법을 확대하여 영해상의 발견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나라: 헝가리, 리비아, 브르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에멘등
난파선과 해난구조법	-역사적인 난파선에 관한 조항 삽입: 베트남 -유물구제법(프랑스, 모나코): 구조보상의 원칙 적용
귀중한 발견물법	-영국 시민법: 소유주 불명한 금은 따위의 품목 -말레이시아: 금, 은, 금괴, 보물등
연방국가의 법	-문화재관련 연방법과 연방구성국가법이 공존: 구소련 -연방구성국가들의 법이 비슷: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각 주마다 법이 상이: 스위스 -영해와 내륙해 따로 적용: 오스트레일리아 [역사적 난파 선박 법령 1976] -미국: 텍사스, 플로리다, 북캐롤라이나 등
국경밖의 법	대륙붕 관련법, 심해저 관련법

#### 4. 관련 국제법

##### 4.1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35개의 조문과 3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협약에서 정의하는 수중문화유산은 적어도 100년 동안 수중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문화적·역사적·고고학적 특성을 가진 인간의 모든 자취를 말한다.(Article 1 - Definitions 1) 여기에는 장소, 구조물, 건물, 예술품, 인간의 유물 및 선박, 항공기, 그리고 그것의 화물이나 유품 등이 포함된다. 협약의 제3조에서는 이 협약과 유엔 해양법과의 관계(Article 3 - Relationship between this Conven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4조에서는 구난법과 발견물법과의 관계(Article 4 - Relationship to law of Salvage and law of Finds)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25조(Article 25 -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에서 보듯이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5조에서는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은 우선 교섭 등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에 부탁되며,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네스코의 조정에 부탁되고 조정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양법 협약의 분쟁해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섭이나 조정 등과 같은 외교적 해결방법은 거의 모든 국가가 분쟁 발생시 사용하게 되는 방법

이므로 해양법협약의 강제성을 띠는 법적 분쟁해결절차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 4.2 해양법협약(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320개의 조문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역사적 물건에 대하여는 오직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개의 조문은 해저유물에 대한 일반규칙(149조)과 접속수역과 심해저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칙들(303조)로 구성되어 있다. 303조 1항은 “각국은 해양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성격의 물건들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들의 역사 유물 보호 의무를 부여하였고 동조 3항은 “이 조문은 소유주의 권리나 해난구조법과 기타 해사규칙, 문화교류에 관한 법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4항은 “이 조문은 고고학적·역사적 성격의 물건 보호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국제법규칙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조문들은 해저유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분쟁해결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해양법 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분쟁해결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협약 제15장이다. 유네스코의 수중 문화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도 다루었듯이 소유권과 관련한 국제분쟁 발생시 해결하게 되는 법적인 해결 절차는 이 해양법 협약 15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해양법 협약이 기반으로 삼은 원칙은 협약에서 명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분쟁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협약 제279조). 모든 국가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협약 280조). 그런데 당사국들이 하나의 해결방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합의로 선택한 방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협약 제 283조에 따라 서로 의견교환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구속력 있는 결정방법을 선택한다. 그 방법에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기구(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제8부속서에 따른 특별중재기구(a special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이다(협약 제287조).

##### 4.3 1989년 국제해난구조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전문 및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일반규정, 2장 구조작업의 수행, 3장 구조자의 권리, 4장 배상요구 및 행동, 5장 최종 약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9년 국제해난구조협약은 과거와는 달리 구조자의 지위를 많이 향상시켰다. 제14조에서는 환경피해방지 및 환경오염확산의 최소화조치에 대하여 괴구

조자는 구조자에게 그 대가로 지출비용의 30~100%까지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21조에서는 구조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보수지급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및 제22조에서는 구조보수의 중간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협약과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과의 관계는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중문화유산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이 구조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수중문화유산의 보호가 최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 5. 보물선 관련 소유권 분쟁

### 5.1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 분쟁

196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플로리다 주정부와 멜 피셔의 아토차호에 대한 법정 소송<sup>2)</sup>과 같이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 분쟁은 대개 정부와 민간업자간에 일어나기가 쉽다. 민간업자가 정부와 분쟁을 하는 경우는 인양물건이 수중문화재로 취급되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해저매장물의 경우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법의 정의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원소유주에게 인양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만약 원소유주가 없을 경우에는 그 매장물이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 매장물이 문화재일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인양자는 발굴에 소요된 경비 정도를 보상받게 된다. 매장물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는 발굴자 또는 인양자가 그 인양물의 80%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저 매장물은 금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은보화도 수중문화재로 취급될 수 있다–수중 문화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고 세계각국의 정부에서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와 발굴자간의 소유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에서 그 분쟁을 중재하게 되겠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해저 인양물 발굴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저에서 보호되어야 할 문화유산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인양되고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보물선 인양 작업이 탐사기술 및 인양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수중고고학이나 문화계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물선 인양 작업의 활성화는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플로리다 주정부는 난파선을 해저자원으로 주장하며 멜 피셔를 제소하였으나 결국, 최고법원은 인양물을 멜 피셔의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5.2 소유권과 관련한 국제 분쟁

국내 분쟁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간의 보물선 소유권 분쟁이다. 서로 다른 국가간의 분쟁은 보유하고 있는 자국법의 차이, 문화의 차이, 현존하는 관련 국제법의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교 분쟁의 가능성까지 있다. 스페인 정부가 미국 베지니아 주 영해에 침몰해 있는 보물선 La Galga호와 Juno호<sup>3)</sup>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소유권의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보물선 인양 작업도 중국정부, 일본정부, 러시아정부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까지는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모든 나라가 만족하는 명확한 국제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 초기에는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만약 분쟁이 법적인 해결절차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고 본론에서 살펴보았던 관련법을 적용하여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다. 국제 재판에서 어떤 사건의 입장은 주로 문서의 형태로 된 적절한 증거자료가 요청되는데 조약원문(Treaty text), 국제기구 및 국내 입법기관의 공식 문서, 외교서한(diplomatic correspondence), 고문서, 지도, 필름, 사진, 종언 서류 등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련협약 등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 1) 국제분쟁 해결시 감안해야 할 요소들

- ① 인양장소(영해 및 접속수역, EEZ, 공해)
- ② 침몰선의 종류(군함, 상선)
- ③ 인양물의 종류(수중문화유산, 금은보화, 기타 가치가 있는 물건 등)

#### 2) 국제분쟁의 해결방법들

- ① 외교적 해결방법
  - 교섭(NEGOTIATION)
  - 중개(MEDIATION)
  - 사실조사(INQUIRY)
  - 조정(CONCILIATION)
- ② 법적인 해결방법
  - 중재(Arbitration)
  - 사법적 해결방법
    -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3) 200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해안에 침몰한 라갈가호(La Galga)와 후노호(Juno)에 대해 기원국인 스페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국제해양재판소의 해저 분쟁 특별부

Table 6 The International relevant Documents

성격	제정기구	문서명
국제 협약	UNESCO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세계유산협약)
		전시문화재 보호협약(헤이그협약)
		문화재 불법밀반출 및 소유권 양도금지 협약
		수중 문화재 보호 협약
권고안	UNESCO	문화재반환협약(유니드로와 협약)
		역사지역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안
현장	ICOMOS	기념물 및 유적보존과 복원을 위한 현장 (베니스현장)
		문화관광 현장
		역사정원 및 조경 보호현장(플로렌스 현장)
		역사도시 및 도시지역 보존 현장 (워싱턴 현장)
		고고유적지 보호 및 관리 현장
		수중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현장
		유럽 건축 유산 보호 현장
미국 ICOMOS	미국 역사도시지역 보호 현장	
캐나다 ICOMOS	퀘벡 역사도시지역 보호 현장	

## 6. 결 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서로 싸우며 살았다. 그리고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에도 이러한 악탈의 역사가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도 깊은 해저속에 묻혀있다. 우리의 식민지사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저에 잠긴 미지의 역사를 탐구하고 개발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이제서야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침몰선인양기술, 문화유산의 보호, 관련법, 관련정책 등-에 대한 깊은 연구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보물선 인양과 관련한 소유권 분쟁의 법적인 문제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한번쯤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고 명확한 관련법 규범이 없을 뿐 아니라 사법적인 해결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사국의 “이의 제기”와 같은 재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다행히,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발효됨으로서 보물선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탐사 기술 및 잠수 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은 수중에 침몰해 있는 많은 가치품들을 발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물선 소유권과 관련한 각 국의 국내 분쟁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보물선의 “개발과 보존” 중 어느 관점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관련정책과 법규범이 정해졌고 소송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빌굴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던 미국 법원의 과거 판례와는 달리 최근에는 정부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수중문화유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추세는 국제적인 흐름이지만 이와 반해서 수중문화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움직임도 적지는 않다. 자칫 정부의 강력한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로 발전하고 있는 보물선 인양 기술 분야의 관심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전문가, 관련업계, 정부조직간에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존메릴스지음/김재원옮김,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교육과학사, pp. 243-271, 1998.
- [2] 李丙朝, 李仲範 共著, 國際法 新講, 一潮閣, pp. 736-785, 1995.
- [3] 이병철, 빌굴과 인양(미지에의 도전2), 아카데미서적
-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정책자료집 제1권, 「수중문화재의 보호」,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 41-72, 1995
- [5]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 [6] 해양고고학, 암초에 걸린 유물들,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 [7] George H. Reid, Marine Salvage, Sheridan House Inc, pp. 122-133, 1996.
- [8] Ric Wharton, THE SALVAGE OF THE CENTURY, BEST PUBLISHING COMPANY, pp. 81-104, 2000.
- [9] 황동환, 김성필 편저, 수중 유물 빌굴의 기초, 해군사관학교, pp. 85-124, 1994.
- [10] 채수종, 배이야기, 지구촌, pp. 187-193, 1996.